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의회운영위원회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82호
----------	-------

2017. 9. 11.(월)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박 한 범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8월 29일

-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-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검토보고 요지 (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배훈)

- 본 조례안은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,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·조사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·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4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5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6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8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9월 11일

제출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
1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항)
- 피감사기관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(안 제5조제1항제3호)
-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참고인의 증인 전환·선서 신설 및 선서에 관한 준용 법률 변경(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도의 행정사무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고 한다) 또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”를 “도 또는 교육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즉시 도지사”를 “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·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·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「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본청

2. 도교육청

3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

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

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
제5조제1항제6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(중전의 제5호) 본문 중 “법 제104제2항”을 “법 제104조제2항”으로, “사무(지방자치단체)”를 “사무(지방자치단체)”로, “사무를”을 “사무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본회의”를 “본회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(중전의 제6호) 본문 중 “지방공사·지방공단외”를 “지방공사·지방공단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조사의”를 “조사”로, “조사함에 있어서”를 “조사할 때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

를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21조 중 “구성·운영등”을 “구성·운영 등”으로 하고, “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	<삭 제>
제2조(감사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<u>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</u>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	제2조(감사) ① ----- -----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</u>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<u>도지사</u>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</u>	⑤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고 한다) 또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 -----.

제3조(조사)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 행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무보조자) (생략)

<신설>

제3조(조사) ① -----

--- 도 또는 교육청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 지체없이
도지사 또는 교육감-----
-----.

제4조(사무보조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·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·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「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) ① (생략)

1. 충청북도

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

3.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

<신 설>

<신 설>

4.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
5. 법 제10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(지방자치단체에 위임

조례」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

1. 도본청

2. 도교육청

3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

4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

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

6. 도-----

7.----- 제104조제2항-----

사무(지방자치단체-----

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
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출자·출연법인 중 충청북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

① ~ ③ (생략)

----- 사무는 -----

----- 본회의-----

-----.

8. -----
----- 지방공사·지방공
단 외-----

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 조사 -----

----- 조
사할 때 -----

-----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

① ~ ③ (생략)

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준용규정)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의회회

④ 의장 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21조(준용규정)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

의규칙을 준용한다.

운영에 관한 조례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1조(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5조(직속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7조(사업소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.

1.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

2.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

제78조(출장소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

2.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
3.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.

1.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(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)의 경우

2.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

제79조(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

2.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

3.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